

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9년 9월 20일

옥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

-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이유

- 수탁금융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결손규정, 용자 및 상환조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규칙 전반의 ‘금융기관’을 ‘금융회사’로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

3. 주요골자

- ‘금융기관’을 ‘금융회사’로 개정(규칙 전체)
- 수탁금융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결손규정삭제(안 제2조)
- 용자 및 상환조건에 대한 규정 삭제

4. 의견제출

- 「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 : 문화관광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TEL : 043) 730-3424, FAX : 043) 731-1986

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5. 붙임

-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(이하“조례”라 한다)”를 “「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군수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군수는 「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3조제1항에 따라”로, “금융기관에”를 “금융회사에”로, “금융기관이”를 “금융회사가”로,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금융기관(이라 “수탁금융기관”이라 한다)은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(”를 “금융회사(이하 “수탁금융회사”라 한다)는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(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탁금융기관은”을 “수탁금융회사는”으로, “계리하여야 하며,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”을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이 다음 각호의 1”을 “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임기 중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”을 “해촉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예외로 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1조 규정”을 “제11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의한”을 각각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1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1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9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하고,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12조)제1항 중 “수탁금융기관은”을 “수탁금융회사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탁금융기관이”를 “수탁금융회사가”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.

제13조(중전의 제15조)의 제목을 “사후관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”를 “수탁금융회사”로 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14조)의 제목 “(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)”을 “(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수탁금융기관”을 “수탁금융회사”로,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탁금융기관에”를 “수탁금융회사에”로, “수탁금융기관은”을 “수탁금융회사는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			
신청인	① 대표자성명		② 생년월일
	③ 업소명		④ 전화번호
	⑤ 소재지		⑥ 사업자등록번호
사업체 규모	⑦ 영업장 종면적	m ²	⑧ 자산총액 천원
대상업종	⑨업종	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식품제조가공업, 식품 판매업, 기타	
자금용자 신청내역	⑩ 실소요금액	⑪ 융자신청금액	⑫ 비율(⑪/⑩)
			%
위와 같이 「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			
군청확인	년 월 일	지정은행확인	
확인자		은행명	
직명성명		대출	가능, 불가
(인)		확인자	(인)
옥천군수 귀하			
구비서류 1.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 2. 영업신고증 사본 1부. 3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<u>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</u>」(이하"조례"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대출업무의 위탁) ① <u>군수</u>는 <u>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</u>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을 <u>금융기관</u>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, 대여금리는 <u>금융기관</u>의 <u>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안</u>에서 낮게 정한다.</p> <p>② <u>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(이하"수탁금융기관"이라 한다)</u>은 <u>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(별지 제1호서식)</u>를 <u>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</u>.</p> <p>③ <u>수탁금융기관은</u>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<u>계리</u>하여야 하며, <u>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산을 부담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대출업무의 위탁) ① <u>군수</u>는 「<u>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</u>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<u>제13조제1항에 따라</u> -- <u>금융회사에</u> ----- <u>금융회사가</u>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금융회사(이하 "수탁금융회사"라 한다)</u>는<u>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</u>(----- -----.</p> <p>③ <u>수탁금융회사는</u> ----- ----- <u>회계</u> <u>처리</u>----- ----- --.</p>

제4조(위원의 해촉 등) 군수는 위
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의
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
중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
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이 회의를
소집하고자 하는 경우, 회의개
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
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
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
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
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략)

제9조(용자신청 및 대상선정) ①
조례 제11조 규정의 "규칙이 정
하는 서류"라 함은 다음 각호의
서류를 말한다.

1.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
진흥기금용자신청서

2.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
시설개선사업계획서

3. 4. (생략)

②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
용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
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

제4조(위원의 해촉 등) -----

---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----- 해촉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회의) ① -----

예외로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용자신청 및 대상선정) ①

--- 제11조-----

1. ----- 따른 -----

2. ----- 따른 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 제11조에 따라 -----

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용
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,
조례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용자대상을 확정한다.

제10조(용자대상 선정 통보) ①
군수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
하여 영업자가 제출한 용자대상
업소의 용자신청금액이 용자계
획금액을 초과할 경우, 용자대
상 업소별로 용자금액을 감액
조정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1조(용자 및 상환조건) ① 업
소당 용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
업은 5천만원이내, 식품접객업
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.

② 용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
관과 약정하여 정하며, 조례 제
1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
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
여야 한다.

③ 용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
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, 원금은
거치기간 경과후 매 3월마다 상
환한다.

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

-----.

제10조(용자대상 선정 통보) ① -
----- 제9조제2항에 따라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용자금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

2.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, 명의 이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

⑤ 기타 용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2조(자금대출)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용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.

제13조(수용자의 관리)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용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

제11조(자금대출) ① 수탁금융회사는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수탁금융회사가 ----- 따르
다. .

<삭 제> 수탁금융회사-----

여(별지 제5호서식) 용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4조(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)

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5조(사후관리) 군수는 용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용자금관리대장을

별도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-----.

제12조(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)

① 수탁금융회사-----
----- 따라 -----
-----.

② -----
--- 수탁금융회사에 -----

----- 수탁금융회사는 -----.

제13조(사후관리) 군수는 용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용자금관리대장을

별도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규 칙 명 :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규 칙 안	의 견